

정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8266호, 2004. 1. 29. 공포·시행)하였으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시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함에 따라 2006년까지는 70세 이상 72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 인
국무총리

2004년 4월 1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 대통령령 제1836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1조의3제3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17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의3.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교환·합병·영업양도양수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제17조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둔다.

②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1인
2. 주식교환·합병·영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의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091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영 제6조의2 신설).
- 나.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당해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 등을 공인평가기관

으로 하도록 함(영 제6조의3 신설).

- 다.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기능에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관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고 건인
국무총리

2004년 4월1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광결호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18368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